

안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1187
----------	------

제출년월일 : 2003. .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정액보조단체별 지급 상한 기준액을 지침으로 규정하던 것을 폐지하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둘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Ceiling제)를 도입하여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등을 자율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예산과목중 '사회단체보조금'의 사회단체별 지원규모 결정등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 나.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 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계획에 따른 절차 및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 라.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당연직·위촉직 위원의 요건 및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15조).
- 마.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성격별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11조).
- 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 처리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4,200천 원(연)

○ 위원회 참석수당 : 20명 × 70,000원 × 3회 = 4,200천 원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 2003. 9. 20 ~ 9. 30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표준안(행정자치부)

○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행정자치부)

안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공공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회단체"라 한다)등에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자치단체별 예산규모, 면적, 인구수 등에 의하여 상한기준액(총액)이 정하여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사회단체별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2. 제1호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3.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 ①시장은 매년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인터넷·직접 통보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접수기한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접수 및 심사) ①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범위) ①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불일 수 있다.

③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보조금의 총액중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연중 새로이 발생되는 보조사업의 지원을 위한 경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 제외 대상 여부
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 소속된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시본청 국장, 보건소장, 4급 사업소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원, 교육계 인사, 종교인, 법조인, 공인회계사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의견과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사회단체의 성격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5명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①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기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위원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별도계정의 설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보조금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기획예산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담당·팀장 직위·성명	예산담당 김시호
	담당자 성명·전화	이선희 (행정 2807)

안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187
----------	------

제안년월일 : 2003. 12. 6

제 안 자 : 의회 · 행정위원회

1. 수 정 이 유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보조금 총액 20% 범위안에서 따로 지원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심의사항은 전체 회의에서 결정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며,
- 심의 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을 수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자

- 사회단체 보조금의 총액중 20% 범위안에서 연중 새로이 발생되는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
(안제6조제3항)
- 안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위원직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수정함(안제8조제1항)
- 각종 심의사항은 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한 후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안제11조제3항)

안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제1항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시장이된다”
를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11조중 제3항을 신설하고,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6조(지원범위)</p> <p>①~② (생략)</p> <p>③ <u>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보조금의 총액 중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연중 새로이 발생되는 보조 사업의 지원을 위한 경비로 따로 정할 수 있다.</u></p>	<p>제6조(지원범위)</p> <p>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 삭제 ></u></p>
<p>제8조(위원회의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u>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u></p>	<p>제8조(위원회의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u>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장에서 호선한다.</u></p>
<p>제11조(분과위원회)</p> <p>①~②(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③(생략)</p>	<p>제11조(분과위원회)</p> <p>①~②(원안과 같음)</p> <p>③ <u>각종 심의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 후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u></p> <p>④(원안 제3항과 같음)</p>